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66
----------	-------

발의연월일 : 2026. 4. 3.

발 의 자 : 박홍배 · 김 윤 · 한준호
윤준병 · 윤건영 · 김성희
박 정 · 박희승 · 송재봉
이정현 · 김한규 · 김태년
진성준 · 민병덕 · 이정문
김남희 · 박지원 · 오기형
이훈기 · 김남근 · 이주희
김현정 · 김우영 · 박정현
서미화 · 한정애 · 정준호
김태선 · 최혁진 의원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 자문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고 있음. 유럽연합은 「Shareholder Rights Directive II」를 통해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 및 의결권 행사 정책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의결권 자문기관에 대해서도 이해상충 관리와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자율규범의 성격에 머물러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의결권 자문기관의 영향력이 최근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자문 기준 및 이해상충 관리 등에 관한 최소한의 공시 의무나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주권 행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고객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공시와 금융위원회의 수탁자 책임 활동 평가 및 결과 공개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수탁자 책임에 따라 금융회사에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의결권 자문 기준, 분석 방법 및 이해상충 관리 정책 등에 관한 공시 의무를 규정하여 의결권 자문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권 행사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제33조의3 및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수탁자 책임

제33조의3(수탁자 책임) ① 금융회사는 수탁받은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위탁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이하 “수탁자 책임”이라 한다)을 다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수탁자 책임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수탁자 책임 정책
2.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세부 이행 지침
3. 투자대상 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 정책
4. 의결권 행사 정책 및 행사 내역
5. 수탁자 책임 활동의 주기적 보고
6. 그 밖에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④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33조의4(의결권 자문기관의 등록 등) ① 금융회사에 수탁자 책임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의결권 자문 기준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 안건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3.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43조제1항에 제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3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권 자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융회사에 수탁자 책임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무로 하고 있는 자는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의2 수탁자 책임</u></p> <p><u>제33조의3(수탁자 책임) ① 금융회사는 수탁받은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위탁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이하 “수탁자 책임”이라 한다)을 다하여야 한다.</u></p> <p><u>② 금융회사는 수탁자 책임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u></p> <p><u>③ 금융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수탁자 책임 정책</u> <u>2.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세부 이행 지침</u> <u>3. 투자대상 회사와의 이해상충 방지 정책</u> <u>4. 의결권 행사 정책 및 행사 내역</u> <u>5. 수탁자 책임 활동의 주기적 보고</u>

<신 설>

6. 그 밖에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33조의4(의결권 자문기관의 등록 등) ① 금융회사에 수탁자 책임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의결권 자문 기준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 안건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4. (생략)

<신설>

25. · 26.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8의2. (생략)

<신설>

9. · 10. (생략)

③ · ④ (생략)

3.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 -----

-----.

1. ~ 24. (현행과 같음)

24의2.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 26. (현행과 같음)

② -----

-----.

1. ~ 8의2. (현행과 같음)

8의3. 제3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9. · 10.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